

동업계약의 해지와 상호의 서비스표등록권 소유 관련 합의 및 부제소합의 - 부제소합의

약정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 및 2011. 3. 10. 위 양수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후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관할 보건소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서비스표의 무상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동업계약 9조 '상호는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로 하며, 향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 '공동개원기간 중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위하여 사전통고

를 한 자'로서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 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약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상 부제소합의의 존재 및 범위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 21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이 사건 소와 같이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어떠한 합의나 계약을 하면서 그 합의나 계약에 부수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부제소합의의 취지는 향후 그 합의나 계약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소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일인 2017. 6. 8. 이후에도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6. 9. 피고에게 '피고의 휴업신고로 인하여 내방 예약된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시 폐업신고를 해주신다면 이 사건 상호 및 상표(이 사건 서비스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정되기 전까지 본인은 위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상호로 개업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로써 이 사건 부제소합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당한 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게다가 원고는 2017. 6. 2.자 협조 요청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오직 원고에게 있고, 피고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그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까지도 암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피고의 휴업신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에 따라 자신에게 이 사건 상호 내지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다고 믿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 그것이 그 자체로 법질서에 위배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설령 피고의 휴업신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 이를 소명함으로써 위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었다. 이렇듯 원고에게 여러 법률적인 대응 방안이 있었고,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써 분쟁을 종결하고자 한 원고의 선택이 피고의 휴업신고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포 등을 느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동업분쟁, 상표분쟁, 조합청산, 기업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